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 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3178호

나. 발의자 : 이효원 의원 등 31명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10월 20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
### II 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 따른 학생 대상의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'실적조사'는 단순한 양적 집계에 머무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바, 전반적인 '실태조사'에 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- 최근 개정된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서 예방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- 또한 교육감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고 그 내용을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의 실효성을

높이고자 함

### III. 주요내용

- 제목 '실적조사'를 '실태조사의 실시 등'으로 변경함(안 제6조)
-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조항으로 구성하고 각 호에 실태조사 내용을 구체화함(안 제6조제1항)
- 교육감이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제2항 신설)
- 교육감이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제3항 신설)

### 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학교보건법」, 「청소년보호법」 등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
3. 입법예고 : 2025. 10. 28. ~ 11. 1.(의견: 없음)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이효원 의원 등 31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3178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서 예방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, 교육감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고 실행 계획에 반영하여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1) 실태조사의 실시 등(안 제6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6조는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각 호에는 실태 조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(제1항), 교육감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(제2항),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 육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(제3 항).
- 현행 조례의 ‘실적조사’는 ‘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조사’를 의미하는 반면,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의3(마약류 중독·오남용 예방교육)에서 규정하는 ‘마약류 중독·오남용에 대한 실태 조사’는 예방교육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.

[표-1] '실적조사' 및 '실태조사'에 대한 내용 비교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제6조(실적조사)	학교보건법 제9조의3(마약류 중독·오남용 예방교육)	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(실태조사)
교육감은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	<p>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·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 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·중독·확산 및 예방·치료·재활·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<sup>1)</sup> 또는 총리령<sup>2)</sup>으로 정한다.</p>

- 안 제6조제1항은 이러한 실태조사 개념을 반영하여, 예방교육 실적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의 마약류 중독·오남용 실태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

○ 또한 안 제6조제1항은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의3(신설 2025.3.18.)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는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와의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 을 고려하면서, 교육감이 현실적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아울러 안 제6조 각 호의 내용<sup>3)</sup>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」 제48조의3(실태조사)<sup>4)</sup>에 포함된 사항과도 일치하여, 중앙정

1) 「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(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)

2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8조의3(실태조사)

3) 1.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현황 및 효과성 평가  
2.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·지식 및 태도  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8조의3(실태조사)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용·확산 및 예방·재활·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
 1.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
 2. 마약류에 대한 인식·지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 
 3. 마약류 사용 경험 및 원인에 관한 사항  
 4.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

부의 조사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.

- 이어서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은 교육감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예방교육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현행 법령에서는 마약류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나,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조사결과를 공개한 사례<sup>5)</sup>가 있으며, 이는 학부모·학생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,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정책 추진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.

또한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의3 제4항에서도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,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2) 위탁(안 제11조)에 대한 검토

- 안 제11조는 기존의 예방교육 및 연수 사무뿐 아니라, 안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무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유해약물 오·남용 실태조사는 예방교육 업무와 마찬가지로 법률·의학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,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

---

5. 마약류 예방·재활 관련 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면접조사, 전화조사, 온라인조사, 방문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5) 식약처,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(2024.4.12. 메디칼허브)

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<sup>6)</sup>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
이에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제1항제3호는 ‘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’를民間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유해약물 오·남용 실태조사를民間 전문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1조는 적정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13602, 2025.10.30.)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김명신(2180-8269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---

6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8조의3(실태조사)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# 관 계 법령

## 학교보건법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탑법개정]

제9조의3(마약류 중독·오남용 예방교육)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·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(이하 “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·오남용 예방교육(이하 “마약중독예방교육”이라 한다)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1.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
  2.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
  3. 「아동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
-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·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##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마약류관리법 )

[시행 2025. 10. 2.] [법률 제20878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제51조의4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·중독·확산 및 예방·치료·재활·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.

## **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)**

[시행 2025. 2. 7.] [총리령 제2011호, 2025. 2. 6., 일부개정]

제48조의3(실태조사)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용·확산 및 예방·재활·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
  2. 마약류에 대한 인식·지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
  3. 마약류 사용 경험 및 원인에 관한 사항
  4.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
  5. 마약류 예방·재활 관련 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
  6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면접조사, 전화조사, 온라인조사, 방문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## **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**

[시행 2019. 3. 28.] [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, 2019. 3. 28., 일부개정]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4.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